



"건강한 지구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가이드북

KOREA  
FOREST  
SERVICE



산림청





"건강한 지구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가이드북



산림청

# Contents



■	본 제도의 도입 배경	06
■	제도 개요	07
	– 수입신고 대상품목	07
	–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08
■	국가별 표준가이드(CSG)	11
■	수입신고 절차	12
	– 수입신고 절차	12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수입신고	13
	– 수입신고 처리현황 조회	17
	–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완서류 제출	18
■	주요 Q&A	24



"건강한 지구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가이드북





## 본 제도의 도입 배경

- Seneca Creek Associates의 2004년 보고서에서는 세계 목재제품의 5~10%가 불법벌채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영국 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m<sup>3</sup>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 불법벌채율 추정(최대) : 브라질 아마존(72%), 카메룬(35%), 가나(65%), 말련(25%) 등
- 이러한 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호주를 비롯한 32개국에서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 불법목재 교역제한 국가 : 미국('08), EU 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목재제품 수출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7.3.21) 하였으며 '18.10.1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됩니다.

###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수입신고 및 검사제 도입으로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 기 제도를 도입한 국가 등으로 목재류 수출 시 합법성 요건 구비로 수출 활성화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지위 향상 및 산림보전에 기여



## 제도 개요

- '18년 10월 1일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시 목재이용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업송장(Invoice)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 대상품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목



#### 2. 제재목



#### 3. 방부목재



#### 4. 난연목재



#### 5. 집성재



#### 6. 합판



#### 7. 목재펠릿



※ 시범운영기간(2018.10.1.~2019.9.31.)임을 감안하여, 대상품목의 HS Code는 "4403, 4407, 4412, 4401.31"로 최소한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재정비할 계획임

##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3제2항 및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ex) 인도네시아 - SVLK, V-Legal  
미국, 캐나다 - SFI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ex) 인도네시아 - FLEGT License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ex) 캐나다 -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원목만 해당  
파푸아뉴기니 -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ex) 말레이시아 - '운송허가서(Removal Pass(Royalty, Transit/Export))'  
브 라 질 - '운송허가서(DOF:Documento de Origem Florestal, GF3:Guia Florestal 3)'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ex) 해당 국가 : 미국, EU(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 EU(28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뉴질랜드 - '목재생산세납부확인서(Harvested Wood Levy Statement)'  
러시아 -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 계약신고번호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 분야별산림정보 → 산림보호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제도소개 → 하단에 고시(국문, 비공식 영문본) 다운로드 가능

**참고**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목재합법성 확인서**

수입업자

■ **수급자 :**

수종

: 수종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수종 기재

품명	단위	수량	수종	원산지
ex) 합판	m <sup>3</sup>	50	라디에타파인(%)	뉴질랜드
			유칼립투스(%)	인도네시아
			포플러(%)	중국

※ 원자재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원산국 또는 모든 수종을 기재함

**원산지**

: 수출국이 아닌 해당 목재의 원산국

\* 원자재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인 경우 원산국 모두를 기재

상기 내용은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까지 수급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 물품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며, 한국 정부에서 목재합법성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협조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2018.10.1.~2019.2.28.(5개월, 총 계약수량이 1000m<sup>3</sup>인 경우

▶ 300m<sup>3</sup>씩 나눠서 수입하는 경우 잔량 소진될 때까지 해당 확인서 이용 가능

20년 월 일

수출업자 정보(서명포함)

주소 :

상호명 :

대표자 :

연락처 :

(서명)



## 국가별 표준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

- 산림청에서는 국내 수입업자가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 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에 목재합법성 인정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입증 서류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확인 결과에 따라 인정여부가 정해지게 되며, 가이드라인은 국가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 [분야별산림정보](#) → [산림보호](#)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국가별 표준가이드\(CSG\)](#)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onser/conser\\_090301.html&mn=KFS\\_02\\_02\\_07\\_03](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onser/conser_090301.html&mn=KFS_02_02_07_03)

**산림보호**

- 산불 >
- 병해충 >
- 백두대간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나고야의정서(ABS) >
- 숲사랑 >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란
- Q&A
- [국가별 표준가이드\(CSG\)](#)

▶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보호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국가별 표준가이드(CSG)** f t 스 프린트

**국가별 표준가이드(CSG)**

\* 관련문의 : 임업통상팀 양경은, 042-481-1804 [최종수정 : 2018. 09]

**1 국가별 표준가이드(C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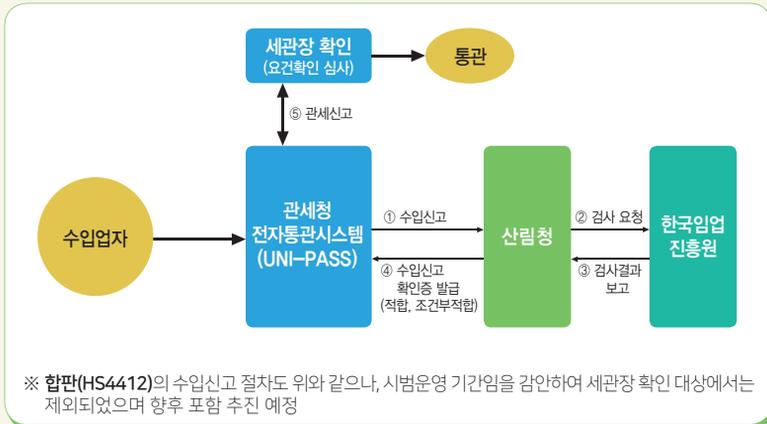
- ① 본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의 수입업자가 원산국의 법령 및 규정을 잘 이해하고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산림청의 요청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작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 ② 산림청에서는 국내 수입업자가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를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번역본과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본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에 목재합법성 인정 서식으로 명시되지 않은 입증 서식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확인 결과에 따라 인정여부가 정해지게 되며, 해당 국가에서 서류를 확인해주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④ 가이드라인은 국가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유럽	독일 가이드라인(2018.8.27)	
	라트비아 가이드라인(2018.8.27)	
	불가리아 가이드라인(2018.8.27)	
	영국 가이드라인(2018.8.27)	
	이탈리아 가이드라인(2018.8.27)	
	체코 가이드라인(2018.8.27)	
	포르투갈 가이드라인(2018.8.27)	
	슬로베니아 가이드라인(2018.8.27)	
	프랑스 가이드라인(2018.8.27)	
	EUTR	

## 수입신고 절차

- 수입업자(대행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sup>1)</sup>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서<sup>2)</sup>를 발급하며, 수입업자(대행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후단에 따라 조건부로 신고가 수리된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서류에 대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판매·유통이 금지됩니다.

### 수입신고 절차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내 요건신청서 이름은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서"  
 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내 요건확인서 이름은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확인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수입신고**

1.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로그인 후 상단메뉴인 통관 단일창구를 클릭하면 하위메뉴 항목이 나타납니다.
2. 하위메뉴인 요건신청 중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검색란에 '산림청' 클릭 후 2번째 항목인 목재(목재제품)수입신고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No	기관명	신청서명
1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식물검역통관정보시스템 착업에 따른 서비스 일시 중단 알림
2	산림청	[필목]10월 시스템을 통한 집중 계도기간 안내입니다.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필목]「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시행(18.4.1 ~)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용품안전인증요건확인신청서 작성 시, 필수검증 오류 처리방

4. 공통사항에 “신청인, 수입자, 수입화주, 수출자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서** ★

공통사항 ▶ 품목사항 ▶ 첨부파일

④ \*신청번호 WABK5 - 18 - 재번 \*신청일자

\*전송구분 원본

---

**신청인**

*상호(명칭)	산림청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되어 있음
*대표자성명	오수지	
*전화번호	042-481-1807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1동 산림청 임업홍상팀	

---

수입자  신청인과 동일

*상호(명칭)		수입자 정보 입력 (신청인과 동일시 “ <b>신청인과 동일</b> ” 버튼 클릭)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

수입화주  수입자와 동일

*상호(명칭)		수입화주 정보 입력 (수입자와 동일시 “ <b>수입자와 동일</b> ” 버튼 클릭)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

수출자

*수출국		수출자 정보 입력
*수출회사 주소		



5. 품목사항 클릭 후 수입신고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내용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신고내용이 표시됩니다.

- 품목식별부호 : 신고내용 작성 시 자동 생성됨
- 원산국 : 해당 목재(목재제품)의 벌채 국가

ex) “브라질(원자재)-호주(수출)-한국(수입)”과 같이 브라질 목재를 수입하여 호주에서 재수출하는 경우 원산국에는 “브라질” 기입

- 수종코드에 해당 수종이 없는 경우 : “기타” 선택 후 자율입력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서 ☆

공통사항 > 품목사항 > 첨부파일

\*신청번호 WABKS - 18 - 재민 \*신청일자 2018-09-17

\*전송구분 원본

전송구분

원본 : 해당 신청서가 최초 전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전송 : 해당 신청서 최초전송 이후부터 요건기간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취소 : 요건기간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내용

\*HS부호 [ ] \*품목식별부호 [ ]

\*제품명 [ ]

\*수종코드 선택 [ ]

모텔규격 [ ]

성분 [ ]

순중량 KG [ ] 총중량 KG [ ]

수량 # [ ] 총수량개수 # [ ]

단가 USD [ ] 금액 USD [ ]

\*원산국 [ ] 생산회사 상호(영자) [ ]

생산회사 주소 [ ]

선택명 [ ] \*국내도착일 [ ]

입항일 [ ] 화물관리번호 [ ]

보관장고 [ ] \*선하증권번호(BL번호) [ ]

보관장고 전회번호 [ ]

⑤ 추가

⑥ 추가

품목식별부호	HS부호	제품명	수종	중량 (KG)	수량
D18001		제재목	유칼립투스	1,994	1.994

\*HS부호 [ ]

\*제품명 제재목 수종코드 [ ]

\*수종코드 선택 기타

모텔규격 [11000]점엽수 [11001]소나무 [11002]리기다소나무 [11003]리기테다소나무 [11004]테다소나무 [11005]강림지방소나무 [11006]중부진방소나무

성분 [ ]

순중량 [ ]

★ 수종코드에 해당 수종이 없는 경우(외래수종)  
 : “기타” 선택 → 옆 칸에 “00000” 기입  
 ex) “기타” 선택 → 옆 칸에 “유칼립투스” 기입

7. 첨부파일 클릭 후 상업송장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8. 아래 관계서류 유형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 2018.10.1. 이전 선적 건에 대해서는 '기타' 선택 후 B/L서류를 업로드
9. 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파일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신 수입신고서를 전송합니다.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서 ★ Home >

공통사항 > 품목사항 > **첨부파일**

\*상장번호 WABKS - 18 - 재번 \*신청일자 2018-09-17

\*전송구분

전송구분

원 본 : 해당 신청서가 최초 전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전송 : 해당 신청서 최초전송 이후부터 요건기간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취소 : 요건기간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1. 상업송장  
 상업송장 [ ] [찾아보기...]

2. 관계서류  
 기타 [x] [찾아보기...]

관계서류 유형

고시제3조1항: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별채허가서  
 고시제3조2항가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시통제체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포함한다. 서류  
 고시제3조2항나호: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시통제체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고시제3조2항다호: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발효가 예정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고시제3조2항라호: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출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시제3조2항마호: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고시제3조2항바호: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의 산림협정,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 동반자협력(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인증된 인증서류  
 고시제3조2항사호: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업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고시제3조2항다호: 수출국의 정부 또는 중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업체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양)이 붙인 운송화자 또는 포장당에서 증명된 서류  
 고시제3조2항라호: 불특정 목적의 교역verkehrs 위한 발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불특정 목적의 목재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사용하는 서명된 서류  
 고시제3조2항마호: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외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택  
 기타  
 고시제3조1항  
 고시제3조2항가호  
 고시제3조2항나호  
 고시제3조2항다호  
 고시제3조2항라호  
 고시제3조2항마호  
 고시제3조3항가호  
 고시제3조4항가호  
 고시제3조4항나호  
 고시제3조4항다호  
 고시제3조4항라호  
 고시제3조4항마호

임시문서올리기 불러오기 오류진동 임시저장 **전송**



## 수입신고 처리현황 조회

1.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로그인 후 상단메뉴인 통관 단일창구를 클릭하면 하위메뉴 항목이 나타납니다.
2. 하위메뉴인 요건신청 중 '신청서처리현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에 신청했던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No.	제지명	선택	서비스명	신청번호	화주번호	제외입적번호	제조업체번호	처리상태
□	No		서비스명	신청번호	화주번호	제외입적번호	제조업체번호	처리상태
			가관명	입수번호				
			자문명	승인번호				
	목재(목재제품)수입신고서		WAKS-18-0000C	4403980000	0199002		2018-09-17	
☑	1		신청명	유일검투스(유일검투스(Escalaphus)) 외 것			2018-09-17 21:45:10	기관승인(보신지)
				FOREST 통상	Australia Ltd Co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한 보완서류 제출(조건부 신고 수리 시)

1. 목재자원관리시스템(<http://kfpm.forest.go.kr>)에 로그인 후 상단메뉴인 수입신고를 클릭하면 하위메뉴 항목이 나타납니다.

\*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수입유통업 포함)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목재생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시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로그인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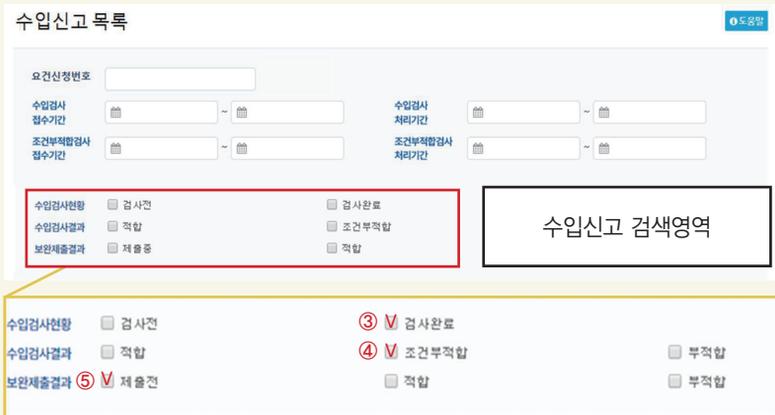
2. 하위메뉴인 “수입신고목록”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신고 목록메뉴 중 수입검사현황에서 “검사완료”를 선택합니다.

4. 수입검사결과에서 “조건부적합”을 선택합니다.

5. 보완제출결과에서 “제출전”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6. 보완서류를 제출 하실 것에 대하여 '신고자'를 클릭하면 '수입신고 상세보기' 팝업창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14건 페이지 (1 / 2)

NO	신고자	수입업체	신고일자	제품명	품목번호	원산국	수출국	처리일자
1	<b>⑥</b> 김신고	한국수입임업유통	2018-06-28(목)	가공목재제품1	021521	러시아	중국	처리전
2	김신고	한국수입임업유통	2018-06-27(수)	가공목재제품1	021521	러시아	중국	처리전
3	김신고	한국수입임업유통	2018-06-26(화)	가공목재제품2	021521	러시아	중국	처리전

7. 수입신고서 상세보기 하단의 보완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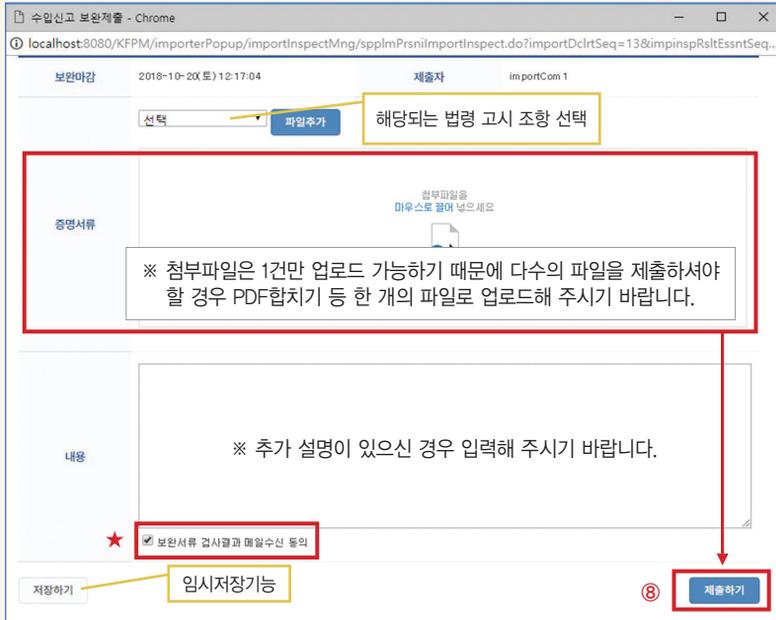
수입검사 정보

검사일시	2018-09-13(목) 12:17:04	검사결과	조건부적합
보완요청 또는 부적합사유	내용없음		

조건부적합 수입신고 보완

처리마감	2018-10-20(토) 12:17:04	제출일	제출자
내용			

8.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면 보완서류를 첨부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보완서류 검사가 완료되면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결과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니, 메일수신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동의체크 되어있음)
- ※ 제출하신 보완서류의 추가 보완제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보완서류 제출 전 단계로 돌아가니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완서류 검사가 완료되는 경우 수입신고 상세 화면 최하단에 검사결과가 나타납니다.





## 참고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 ●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정 등록기준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목재이용법 제24조)  
\* 목재생산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법 제2조제3호)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별지 제33호)하고, 등록대장(별지 제34호)을 작성 관리합니다.



### 〈신청시 첨부서류〉

####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 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 목재수입유통업 :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 ●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2)

① **원목생산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 포함)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 (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② **제재업** :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단 등을 생산하는 것, 그 제제한 산물의 유통 포함)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 판 등 목 질 판상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 재 제 품 이 나 집성목재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 단, 성형목단,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 재 칩, 톱 밥, 목분(木粉)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③ **목재수입유통업**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구 분	장 부 명
1.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2. 제재업자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지만 해당한다)
3. 목재수입유통업자	가. 원목·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지만 해당한다)

## ● 벌 칙

-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목재이용법 제45조 제2항)

## ● 과태료

- 상호·명칭, 소재지 등 변경사항, 양도·합병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목재이용법 제47조 제1항)



## 주요 Q&A

### 1 법 시행일(2018.10.1.) 이전에 선적한 목재 및 목재제품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2018.10.1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 10.1일 선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B/L서류 제출

### 2 수입검사 법적기간이 3일인데, 신속한 통관을 위해 사전에 수입신고 가능한가요?

-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이 발급된 이후부터 통관 전까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적 이후 수입신고를 하신다면 입항 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 3 한 선적에 B/L이 여러 건일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선적 시 1건의 B/L이 발급되었으나 입항 후 화물관리번호(B/L번호)가 분할된 경우, 분할 전 B/L1건으로도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 4 한 업체가 다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는 품목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 한 업체가 다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5 한 국가 내에서 생산·유통·수출 단계별로 업체가 다른 경우 어떻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나요?

- 벌채허가서의 경우 벌채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해주어야 하며, 유통·수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해당 사항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FSC 및 PEFC와 같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 기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의 경우 생산·유통·수출 업체 중 한 업체의 인증서도 인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출업체의 인증서가 아닌 경우 인증서의 출처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 A(생산업체) - B(중간 유통업체) - C(수출업체)

1. C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C의 인증서 제출
2. B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B의 인증서 및 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A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A의 인증서 및 A-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6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선적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상 면적이 1,000<sup>m</sup>³이고 그 중 계약 건이 500<sup>m</sup>³ 라면 전체면적 중 500<sup>m</sup>³만 계약 물량임을 별도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계약건이 1,000<sup>m</sup>³이고 그 중 500<sup>m</sup>³씩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 전체 계약 건 중 1/2, 2/2에 해당됨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구비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별첨으로 설명사항 첨부 가능



## 7 FSC 및 PEFC와 같이 일정기간 유효한 인증서 경우, 수입할 때마다 매번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수입신고 시 FSC 및 PEFC 인증서는 첨부되어야 합니다.
- 다만, UNI-PASS 내 수입신고 시 이전에 신고했던 내역을 불러오기 하여 재작성(첨부물 포함) 가능하므로, 동일 업체의 동일 인증서로 수입 신고 시 수출업체 측에 인증서를 재요청 하거나 새로 업로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8 합판, 목재펠릿과 같이 혼합된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 원칙은 모든 원자재별로 공급체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제도이며 혼합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이니 최대한 소명자료(원자재에 대한 벌채허가서, 공정표, 합법성 입증서류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미국+러시아에서 원자재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합판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 미국(벌지 제1호서식) + 러시아(벌채허가서) + 판매계약서 +공정표



## 9 관계 서류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합법 벌채 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한 관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검사결과와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 가능하며, 이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 유통·판매 이후 수출업자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했음이 발견됐을 경우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피해는 없나요?

- FSC, PEFC 인증서와 같이 서류자체의 진위여부 확인은 수입업자가 판단 후 제출해야하지만, 기타 수입업자의 확인이 어려운 서류의 위조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벌칙부과 등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수출업체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s://info.fsc.org>

\* PEF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www.pefc.org/find-certified>

## 11 서류의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서류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후 점검을 진행하며, 해당국가와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 《공조를 통한 서류 진위여부 확인 사례》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유럽 무역대리업체에서 EUTR 협약에 의해 수입함을 근거로 EUTR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EU국가와의 공조 확인 결과 관련 없는 기관이 해당 서류를 이용하고 있음이 발각됨



"건강한 지구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가이드북

발행일 | 2018년 10월

발행처 | 산림청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제작담당 | 임업통상팀

전화 | Help Desk : 02) 6393-2781~2 (2018.10.1~12.31)

042) 477-3630 (2019.1.1부터)

수입검사 : 02) 6393-2624

인쇄 | 웃고문화사





내 곁에 있는 숲, 내 삶을 바꾸는 숲